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최 승 수*

Seung-Soo Choi

안 건 형**

Keon-Hyung Ahn

〈목 차〉

- I. 서 론
- II.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징과 법적 규제 방향
- III.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및 분쟁의 논점
- IV.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의 중재적합성
- V. 맺음말

주제어 :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특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중재적합성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차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관련 업계에 제시하려 하고 있다.¹⁾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불공정성 또는 소위 노예계약 문제는 십년 이상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 되어온 문제이지만, 각종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가 다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에 터진 故장자연씨 사건 등을 계기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입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차체에 우리나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과 전속매니지먼트의 법률적 성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특징, 전속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차례로 살펴보고,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일별함으로써 전속매니지먼트 산업의 입법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전속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및 전속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존의 틀보다는 중재가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 모델이라는 점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고에서는 먼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법적 규제에 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 후,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및 분쟁의 논점을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활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중재가 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최정열(2008), 최승수(2008), 연기영(2007), 남형두(2007), 장재욱(2005), 윤석찬(2005) 등이 있는데, 이 중 최정열의 연구²⁾는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전반에 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1일자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기획사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연예기획사 관련 협회와 연예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다. 상세히는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View.jsp>> 참조.

2) 최정열, “전속 매니지먼트계약”, 『엔터테인먼트법(上)』 손경환 편저, 진원사, 2008, 254-297면.

포괄적으로 개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도 충분히 제시하는 등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연기영의 연구³⁾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을 다루면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실무적·법적 쟁점에 대해 세분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약관법 측면에서의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으로부터 연예인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재욱의 연구⁴⁾ 역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연예인과 기획사뿐만 아니라 극단·방송사·제작사와의 관계에서 맺는 계약실태와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분쟁과 관련된 쟁점들의 개괄적 고찰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부분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며, 윤석찬의 연구⁵⁾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 모두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형두의 연구⁶⁾는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그간의 접근방식을 그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 즉 이해관계자로서 유명인사(celebrities), 일반대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 주체간의 법률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 특히 ADR이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효율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최승수의 연구⁷⁾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ADR의 활용 적합성 그리고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연예인 전속표준약관의 내용 중에는 분쟁해결조항에 중재가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이 삽입될 예정이므로,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 관련 분쟁들이 중재사건으로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고에서 다루는 연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3) 연기영, “전속계약상 연예인의 법적 보호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11호(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155-183면.
- 4) 장재욱, “專屬契約에 관한 小考 -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7집 제4호(중앙법학회, 2005), 197-228면.
- 5) 윤석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계약법적 고찰 - 다양한 계약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통권 54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5-62면.
- 6)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민사법학』, 제35호(민사법학회, 2007), 299-337면.
- 7)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仲裁』 제326호(대한상사중재원, 2008년 가을호), 14-17면.

Ⅱ.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징과 법적 규제 방향

1.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징

(1)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의 결합

우리나라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매니지먼트란 연예인의 경력관리, 즉, 소속 연예인을 위한 출연 작품 또는 악곡의 선택, 홍보, 이미지 관리, 활동스케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에이전시란 소속 연예인을 위한 출연작품을 섭외하거나 각종 출연계약을 성사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이 상대적으로 앞서 발전한 미국의 경우 매니지먼트 회사와 에이전시 회사는 통상 분리되어 있는데, 에이전시의 경우 입법적 규제 및 단체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통상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 기능을 한 회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산업의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이 성질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구조가 더 후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벤처산업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모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큐베이팅 기능과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의 특성이 그것이다.

우선, 연예매니지먼트사는 가능성이 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각종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이미지 관리, 외모 성형, 나아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과 다른 특성인데, 미국의 경우 연예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체로 그 연예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 즉, 배우의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연기 학교를 다니고, 외모 관리 등도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매니지먼트사가 나이 어린 신인을 발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신인 연예인의 경우 일정한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인큐베이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교육·훈련 기간으로 인하여 전속계약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인큐베이팅을 한 후 해당 연예인을 런칭

8) 최정환, “한국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심포지엄 자료집』, 2007, 56-57면.

하였을 경우 성공할 확률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단 성공할 경우 그 수익은 때로 막대할 수 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매니지먼트 사업의 수익성은 소속 연예인의 상품성, 스타성에 종속되고 투자비용 대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분배 비율 및 많은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제작업 겸업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은 최근 들어 그 기업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나아가 매니지먼트 사업 자체만으로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정 탓으로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 음반 제작을 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타급 연예인을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있는 대형 매니지먼트사는 스타급 연예인을 바탕으로 방송사 또는 영화 제작자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드라마제작계약은 제작비용 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외주제작사를 겸하는 매니지먼트사들이 위 거래에 있어서 스타급 연예인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한다.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이 제작업을 겸하면서 소속 연예인을 그 제작 영화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경우에는 이행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⁹⁾

(4) 전속금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신인 연예인이든 중견 연예인이든 불문하고 전속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급 연예인의 경우 매우 많은 전속금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이는 매니지먼트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대외적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신인연예인의 경우 일정 정도 대중의 인기를 얻은 경우 기존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속금을 제시하는 매니지먼트사로 옮기기도 한다. 이 때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하는데, 기존 매니지먼트사로부터 받은 전속금이 적을수록 나아가 새로이 많은 인기를 얻은 연예인일수록 더 많은 전속금을 제시하는 매니지먼트사로 무리하게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이 전속금은 일정한 정도 성공한 연예인을 빼가는 수단이 되고 따라서 잦은 전속 계약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5) 열악한 수익구조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수익은 소속 연예인의 수익에 종속된다. 소속 연예인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매니지먼트사도 이에 비례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어 있다. 연예인이나 매니지

9) 최정환, 전제 논문, 63면.

먼트사의 수익은 방송드라마, TV 프로그램, 영화 또는 음악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런데 방송사에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 영화나 음악 유통에 따른 수익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연예인, 특히 신인 연예인의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외주제작사는 치열한 경쟁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저가의 제작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해야 한다. 부족한 제작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PPL을 집어넣게 되고, 연예인 출연료(특히 신인급 연예인)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영화나 음악의 경우는 어떠한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수익력을 상실한 상황이고, 음악의 경우 비즈니스의 주도권은 이미 이동통신사 등으로 넘어가 있고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연예인 또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돌아오는 몫 또한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규제방향

(1) 규제 입법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전시와 개인매니저 기능을 겸유하고 있는 매니지먼트사는 현재 아무런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에이전시의 기능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을 알선하는 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고¹⁰⁾, 또 실제 유명가수의 지방공연을 알선하는 중개인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모델 에이전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연예매니지먼트사를 직업안정법 또는 기타 특별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입법동향도 있다. 최근 국회 최문순 의원실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 제정을 발의한바 있고, 한나라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위 입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의 등록제, 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신고의무, 연예매니지먼트사의 보수한도, 자기거래 금지, 소속 연예인별 회계분리의무 등을 담고 있다.¹¹⁾ 위 입법안은 연예산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뉴욕 주의 관련 법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텔런트 에이전시를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위원회 위원장(Commissioner)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얻지 않으면 텔런트 에이전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면허를 받은 에이전시라도

10) 최정환, 전계 논문, 63면.

1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W9E0F3W2L5Q1L1A4P9J5Z1E7V6I8 (2009. 6. 30).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커미셔너는 에이전시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있다. 또한 커미셔너는 에이전시의 각종 업무에 관하여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는데, 특히 계약서 양식, 수수료율, 수익자금 관리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에이전트는 소속 연예인과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 등 그 행위에 관한 중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¹²⁾¹³⁾

(2) 바람직한 규제방향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이 다른 기업 형태에 비하여 다소 불투명하거나 전근대적인 운용형태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연예산업 발전의 연혁적인 특성이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미국 등 연예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규제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규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틀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의 대립구도에만 착목하여 매니지먼트사를 규제하겠다는 미시적인 접근만으로는 사안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종사자의 저열한 품성과 비즈니스 관행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갈등구조가 배태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구조에서 연예인이나 매니지먼트사가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자에 대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고 콘텐츠 유통에 따른 가치 사슬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 보니 매니지먼트사가 무리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속 연예인을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거나, 연예인을 착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영화·음악·TV 드라마 등 콘텐츠의 수익창출 환경의 개선, 수익분배비율의 개선,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대책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매니지먼트사 등 콘텐츠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의 몫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고유한 특성이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지난 국회 입법안 중에는 매니지먼트업과 에이전시업에 대하여 별도로 면허를 부여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는 의안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매니지먼트 기능과 에이전시 기능을 하나의 회사가 통합해서 수행해왔고, 매니지먼트 기능만 또는 에

12) 최승수, “미국의 텔런트 에이전트법의 고찰”, 『200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심포지엄 자료집』(2007), 22-33면.

13) Biederman, D. et al,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4th ed.,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2001. 31-36면.

이전시 기능만을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위 기능을 분리하여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적인 논의라 하겠다. 에이전시 기능과 매니지먼트 기능이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업무의 성격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의 제작업 겸업을 금지하는 문제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단계, 수익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제작업을 겸할 때 이해상충이 발생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매니지먼트 사업의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매니지먼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법적·행정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정부가 자율규제를 돕는 방향으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열등한 처지에 있는 연예인들(특히 신인급)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연예인들과 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논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텔런트에이전시법 등을 통해 에이전시를 규제하지만, 에이전시 사업자와 연예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더 현실적으로 규제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변한 연예인 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사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직능별로 연예인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매니지먼트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 유통업자의 대표단체와 협상을 통해 각종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및 분쟁의 논점

1.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개념요소

1)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포괄적 대리권

일반적인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는 연예활동에 대한 대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乙은 자신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고, 甲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乙은 본 계약기간 동안 甲의 사전 승낙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¹⁴⁾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독점적·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는 매니지먼트 계약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대리권 관련 조항이다. 연예인이 소속 매니지먼트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출연교섭 또는 연예활동을 하면 전속계약 위반이 된다. 실제 전속매니지먼트사의 승낙 없이 소속 연예인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전속계약상 독점적 대리권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매니지먼트사가 승소하는 사례도 많다.¹⁵⁾

그러나 위와 같은 매니지먼트사의 독점적 대리권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일신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연예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매니지먼트 회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¹⁶⁾

2) 매니지먼트사의 포괄적 의무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있어서 매니지먼트사는 통상 상대방 연예인에 대하여 교육·훈련, 매니지먼트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점이 미국의 경우와 매우 다른 계약조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갈등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연예인은 이러한 포괄적인 매니지먼트사의 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전속계약상 소속 가수들의 음악 훈련 및 작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음반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숙소 및 작업실 제공 기타 기본적인 인력 및 자금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된 사

14) 피아노 연주자의 매니저의 대리권의 범위는 연주자의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 확보, 공연 비용 또는 출연료결정, 연주일정의 확정 등에만 미칠 뿐 공연계약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618,4625 판결), 이는 본고에서 논하는 전형적인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 벗어난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

15) 서울고등법원 2006.11.28. 선고 2006나10073 계약부존재확인·박선영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16. 선고 99나14831 손해배상 등·강성연 사건 등.

16) 서울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4나78754 손해배상 등·원빈 사건.

례도 있고,¹⁷⁾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소홀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

(2)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전속 연예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위임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그 외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제되고 있다.

1) 위임계약성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제반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기본적인 성질은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한다.¹⁸⁾ 법원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일정 조정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예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계약상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바 있다.¹⁹⁾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니지먼트사는 민법 681조 소정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고용계약성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의 유형에 따라서는 연예인이 수입자 또는 피용자로서 매니지먼트사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전속료 내지 출연료 등의 형식의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²⁰⁾ 그러나 위와 같은 유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실무상 일반적인 형태의 연예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7.선고 2006가합15255 전속계약해지확인-바이브 사건.

18) 최정열, 전거서, 259면.

19) 서울고등법원 2004.5.11.선고 2004라143 결정).

20) 장재욱, 전속계약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집 제4호(2005. 12.), 203면.

2.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의 논점

(1)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

1) 신뢰관계의 파괴와 해지

실무상 주로 연예인이 소속 매니지먼트사와의 신뢰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구체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일처리에 대한 불만과 감정상의 갈등이 원인이 복합되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문제된 사례에서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 즉 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만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²¹⁾

그러나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유형을 불문하고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연예인 측에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예인의 의무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신뢰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전속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사소한 경우에는 함부로 해지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실무상 신인 연예인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 연예인이 일정 수준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고액의 전속금을 제시하는 타 매니지먼트사로 옮겨가기 위해 기존 매니지먼트사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용인할지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의 구속력을 풀어주더라도 매니지먼트사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 잔여 전속계약기간 동안 해당 연예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상 의무위반과 계약해지

먼저 매니지먼트사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예인 측은 주

21) 서울고등법원 2004.5.11. 선고 2004라143 판결.

로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출연교섭 등 에이전시 업무, 차량지원, 교육, 로드 매니저 지원업무 태만, 수입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실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약해지가 인정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례 중 출연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사례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원고(매니지먼트사)의 의무는 그 성격상 결과채무가 아니라 일종의 수단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매니지먼트사)가 출연교섭을 통하여 출연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계약 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출연 교섭 등의 기회제공, 그 밖의 차량지원, 교육, 매니저지원 등 피고의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의 드라마 출연을 반대하여 피고가 위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매니지먼트사로서 당시의 피고의 주변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신경수의 사직 이후 가수 매니저 출신의 매니저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기자 매니저 출신이 아닌 가수 매니저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로드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²²⁾

다음으로 연예인 측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주장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연예인 측이 출연계약이나 음반취입을 거부한 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 체결 등의 사유가 실무상 자주 제기된다. 실제로 “원고가 기획한 뮤직비디오 촬영과정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에 관한 총책임자의 촬영종료 선언이 없었고, 원고의 개별적인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말다툼 도중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고로서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임의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이는 뮤직비디오 촬영 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한 판결례도 있다.²³⁾

(2)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

통상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는 연예인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의 위약금은 다른 종류의 계약보다 그 액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20.선고 2006가합74872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05.12.1.선고 2005나20578 판결.

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인연예인 단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중적 인기를 얻자마자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연예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많은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이 무조건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규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실무상 위약금 규정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판단되고 법원은 대부분 위약금의 액수를 감액해주는 경향이 있다.

(3) 전속계약기간을 둘러싼 분쟁

1) 계약기간의 과다 문제

전속계약의 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 전속계약 기간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때로는 7년의 전속계약기간도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무명의 원고를 피고가 기획, 관리, 홍보하여 유명한 연예인으로 육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무명의 신인을 발탁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가 수익을 올리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인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상당한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수익을 거둘 시점에 계약이 끝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큰 점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다만 법원이 근래에 와서 전속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위 사건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뿐 아니라 최초 약정한 수익분배의 방법을 위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훈련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가수, 연기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계약기간의 기산점은 첫 번째 음반의 발매일로만 정하고 있어,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으로 활동을 원하여 음반을 발매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영원히 종료되지 아니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그 금액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위 전속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이 엿보이고, 이에 비하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0.25.선고 2007가합 2351(본소), 13405(반소).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1.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여 피고의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는 그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연예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 전속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예산업에 있어 초기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기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것이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 중 그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각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전속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의 문제

전속계약 기간의 종료시점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로 된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전속계약 기간을 36개월로 하되 실질적인 계약기간 만료일은 계약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발매하는 음반의 출시일로부터 6개월 후로 하는 한편 연예인은 계약기간 동안 총 5집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기로 약정한 전속계약의 종료시점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6개월이 경과하는 날과 36개월 내에 발매된 음반의 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중 더 늦게 도달하는 날까지 이고, 총 5집의 음반을 제작하기로 정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음반의 수량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가 발매를 목표로 하는 음반의 수량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총 5집의 음반이 발매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음반의 발매여부 및 출시 시점을 피고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이 좌우되어 원고의 지위가 몹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36개월로 정한 계약기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비록 위 기간 내에 5집의 앨범이 모두 제작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된다.”고 판시한바 있다.²⁶⁾

(4) 전속계약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계약조항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예명, 애칭, 사진, 초상, 필적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규정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13.선고 2005가합3125 판결.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경력, 음성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속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전속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 해당 연예인이 기존의 예명 등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최근에 문제된 사례로 ‘하리수’ 사건을 들 수 있다. 연예인 하리수가 기존 매니지먼트사와 결별하면서 ‘하리수’라는 예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기존 매니지먼트사는 ‘하리수’라는 예명을 매니지먼트사 명의로 상표 등록해 두었고, 다른 연예인에게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하려 하자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다. 위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하리수가 그 예명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법원에 판단을 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 예명 사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이용권한은 전속계약기간 중에만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²⁷⁾

가수 그룹의 명칭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의 흥미로운 판결이 있는데, 가수 그룹 “M.C. THE MAX” 사건이 그것이다.²⁸⁾ 이는 음악그룹 “M.C. THE MAX”의 전속매니지먼트사가 그의 명의로 “M.C. THE MAX”를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레코드판, DVD 등을 지정상품으로, 라이브공연업,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 등록하였는데, 그룹 멤버가수들이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무효심결을 내렸는데, 매니지먼트사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청구를 한 사안이다. 특허법원은 그룹가수들(피고들)이 “M.C. THE MAX”라는 이름으로 음반 발매, 콘서트 등 순회공연을 해온 점, 수요자들이 음반구입 또는 음악공연을 결정할 때 음반 발매사나 공연기획사의 표시보다 실연자인 가수의 이름으로 구입 및 관람 여부를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M.C. THE MAX”는 음반 제작사나 발매사 또는 음악기획사나 주최자 등의 표시와는 독립된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27) 최정열, 전제서, 273-274면;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예명 관련 상표권 등은 그 연예인에게 이 전할 의무가 있고, 해당 매니지먼트사가 다른 가수에게 저명한 연예인의 예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또는 적어도 당해 연예인이 그 예명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저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로 보거나 상표권행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28) 특허법원 2007허7808 등록무효(상) 판결.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그런데 이러한 표장은 매니지먼트사 명의로 상표등록이 결정될 당시에 CD 및 음악공연업의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들의 음악이 녹음된 CD 및 음악공연에 사용되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표장이 위 표장과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CD 음악공연업과 동일·유사하거나 최소한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논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속계약기간 후에도 기존 소속 연예인의 예명 기타 명칭을 매니지먼트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인다.

(5)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계약내용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하여 각 매니지먼트사에 내린 시정조치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례

시정조치일	대상 회사	문제 조항	조치내용
2002. 7. 18	(주)디지털수다 등 12개 연예기획사들	과다한 손해배상 규정, 일방적인 전속관할 규정 등	시정권고조치
2002. 7. 19	혜성미디어 등 6개 음반제작사	계약상 지위 양도 규정,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전속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 가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등 조항, 매니지먼트사가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	시정권고조치
2004. 6. 14.	파워엔터테인먼트	과도한 사생활침해조항(고객에 대하여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 포괄적인 위약벌 조항, 홍보활동 강제출연조항(홍보이벤트를 주최하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이벤트의 성격이나 회수에 대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하는 위 조항)	시정권고조치

2006. 9. 19	이병휘사건	불확정적인 전속계약기간 조항(첫 번째 음반 출판일을 예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첫 번째 음반 출판일로부터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계약지위 양도 규정(음반기획제작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양도권을 부여한 조항)	시정권고조치
2008. 11. 20	10대 대형연예기획사들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규정, 과도한 사생활 침해 규정,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규정,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시정조치
2009. 6. 8	(주)스타제국 등 20개 중소형연예기획사들	연예인의 위치 항시 통보 및 연예인 축국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 부과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연예기획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연예인 활동 및 연예인의 모든 계약 통제 조정권을 연예기획사에 일임하는 등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도한 침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 중단 및 연예기획사의 허락없이 연예활동 중지나 은퇴 불가 등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 출연 그리고 소속사 또는 계약사 주관의 행사에 무상출연 등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출연 조항, 연예인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가 일방적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자진시정 또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공정위 연예인 전속표준약관을 2009. 7. 20.까지 채택할 경우 자진시정한 것으로 간주 결정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laws/book/judgeSearch.jsp>>

위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이 체결하는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약관으로 보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상의 불공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사안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더 나아가 대형연예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후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²⁹⁾

29) 공정거래위원회 2002.7.31.시정명령, 서울고등법원 2004.4.1.선고 2002누13613 시정명령취소.

IV.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의 중재적합성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출판, 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배우, 감독 등 주요 종사자들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고, 비즈니스 성공 여부는 창작성(creativity), 타이밍(time-sensitive product), 업계 사람들과의 좋은 네트워크(relationship)에 의존한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포함한 ADR이 적합하다.³⁰⁾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이 중재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해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즉, 중재제도는 중재판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심제도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법원에서 보전처분과 같은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조차도 신속성을 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화 상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작권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상영을 중지하라는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에 의한 즉각적인 조정이나 중재가 더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³¹⁾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분쟁에서도 일부 기획사 대표들은 소속 신인연예인과의 분쟁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1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3심까지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관련 연예인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재에 의한 해결은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연예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은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융통성 있는 조정안을 제시받는 것이 보다 당사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30) 최승수, 전제논문, 14면.

31) Ibid., 15면.

2.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중재규칙 제8조).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당사자 중에는 인기연예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는 프라이버시 영역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경우 외부의 노출은 상업적 활용 기회의 박탈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송보다는 비밀성이 유지되는 중재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연예인들로서는 직업적 특성상 이미지 관리가 생명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²⁾

또한 연예인들에게는 항상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예인들과 매니지먼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온갖 추측성 기사 및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기사 및 정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았던 분쟁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곤 한다.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감정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분쟁관련 보도는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비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이 소송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이다.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의 액수가 대부분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분쟁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중재비용은 모두 합쳐봐야 4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1심 소송비용 110,400원보다 41% 저렴한 금액이다. 만일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중재신청 금액에 따른 중재비용과 법원의 1심 소송비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2) 남형두, 전제논문, 329면.

〈표 2〉 중재비용과 법원 1심 소송비용 대비표

(단위: 원)

신청금액	중재비용	1심 소송비용	비용절감율
1천만원	45,000	110,400	59%
2천만원	90,000	155,400	42%
3천만원	135,000	230,600	41%
5천만원	225,000	320,600	30%
1억원	450,000	545,600	18%
2억원	850,000	945,000	10%

※ 1심 소송비용은 인지비용과 송달료 포함

4. 판정예측 가능성 제고

법원의 소송은 법관에 의해 판단을 받는데 반해, 중재는 각 분야별 국내 최고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여 보다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도중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당사자간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³³⁾

5. 연예산업 분쟁해결의 국제적 중재 트렌드

연예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나 관련 업체들의 사내변호사들에 의해 법원의 소송이 아닌 재판외 분쟁해결방식, 그 중에서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각종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 오래 전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소송절차가 아닌 ADR에 의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력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이자 IFTA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와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인이기도 한 Gerald Phillips의 말을 빌리면 할리우드에서는 소송이 없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³⁴⁾

33) 남형두, 전제논문, 329-330면;

V. 맺음말

우리나라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적인 운영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예계약 파문, 성상납, 착취구조, 연예인 자살,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지만 정작 이러한 산업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점 조사 및 해결방안은 모색되지 않았다. 최근 故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회 등에서 입법적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규제 일변도의 입법,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매니지먼트사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측에 서 있고,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연예인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하되, 연예인들과 매니지먼트 사업자들 사이의 단체협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매니지먼트사가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틀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를 기본요소로 한 위임계약으로,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전속계약기간, 지적재산권,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등을 쟁점으로 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련 분쟁은 기존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판결 내용이 산업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해결책이 아니라서 당사자들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분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를 통해 융통성 있고 신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 전문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등으로 분쟁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전속매니지먼트 계약관련 분쟁도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4) Phillips, G.-Ignacio, V., "Entertainment Industry Recognizing Benefits of Mediation," *17-WTR Ent. & Sports Law.* 29, (Winter, 2000); 남형두, 전계논문, 330면, 각주 69 재인용.

참 고 문 헌

-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민사법학』 제35호, 민사법학회, 2007.
- 장재욱, “전속계약에 관한 소고 -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7집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 최정열, “전속 매니지먼트계약,” 『엔터테인먼트법(上)』 손경한 편저, 진원사, 2008.
- 최승수, “미국의 텔런트 에이전시법 고찰,” 한국의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의 역할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10.
- _____, “엔터테인먼트법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仲裁』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 최정환, “한국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심포지엄 자료집』, 2007.
- Biederman, D. et al,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4th ed.,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2001.
- Phillips, G.·Ignacio, V., “Entertainment Industry Recognizing Benefits of Mediation,” *17-WTR Ent. & Sports Law* 29 (Winter 2000).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W9E0F3W2L5Q1L1A4P9J5Z1E7V6I8
- <http://www.ftc.go.kr/news/report/reportView.jsp>
- <http://www.ftc.go.kr/laws/book/judgeSearch.jsp>

ABSTRACT

A Study on Legal Issu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Seung-Soo Choi
Keon-Hyung Ah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K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Key Words :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Key Features of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Legal Issues and Contents of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tandard Model Form, Arbitration Appropriateness